

정부의 창업지원제도 및 금융조달 방법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확대육성발전과 지역별 균형성장 및 건실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창업한 자에 대해 각종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 영 춘

중소기업진흥공단 팀장

1. 창업지원대상과 지원체계

사업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동법 제1조에서 법제정의 목적은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있는 성장을 통하여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 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가. 창업의 범위와 지원대상 업종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자금, 세제, 제품구매 등 모든 부문에서 창업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창업의 개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명시된 창업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 창업일(사업의 개시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창업지원법상 적용대상업종
창업을 했다하여 모든 업종이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적용받는 업종은 그림 1과 같음.

○ 중소기업의 범위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국가지원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사업을 말하며, 중소기업자의 구분은 상시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기준과 업종의 특성 및 자산 규모에 따라 업종별 별도 기준으로 구분됨.

○ 창업지원법상 창업이 아닌 경우

창업지원법에 적용되는 업종으로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모두 창업지원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형식상의 절차만이 있을 뿐 창업의 효과가 없는 경우는 '순수한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지원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나. 창업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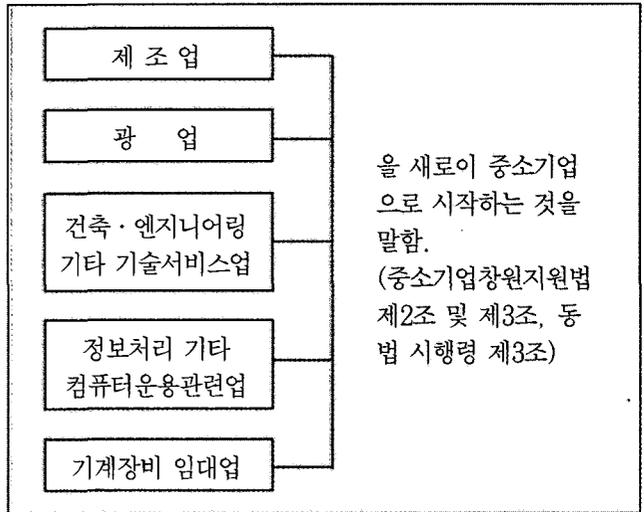
정부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에서 창업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각종 지원시책을 요약하면 <그림 2>와 같음.

<일반적인 기준>

업종	구분	중 소 기 업	
		소기업	중기업
○ 제조업·광업·운송업		50인 이하	51인~300인
○ 건설업		30인 이하	31인~200인
○ 상업·기타 서어비스업		10인 이하	11인~20인

- 일반적인 기준과 업종별 별도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중소기업에 해당됨.

<그림 1>



2.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가. 자금지원제도

1) 창업지원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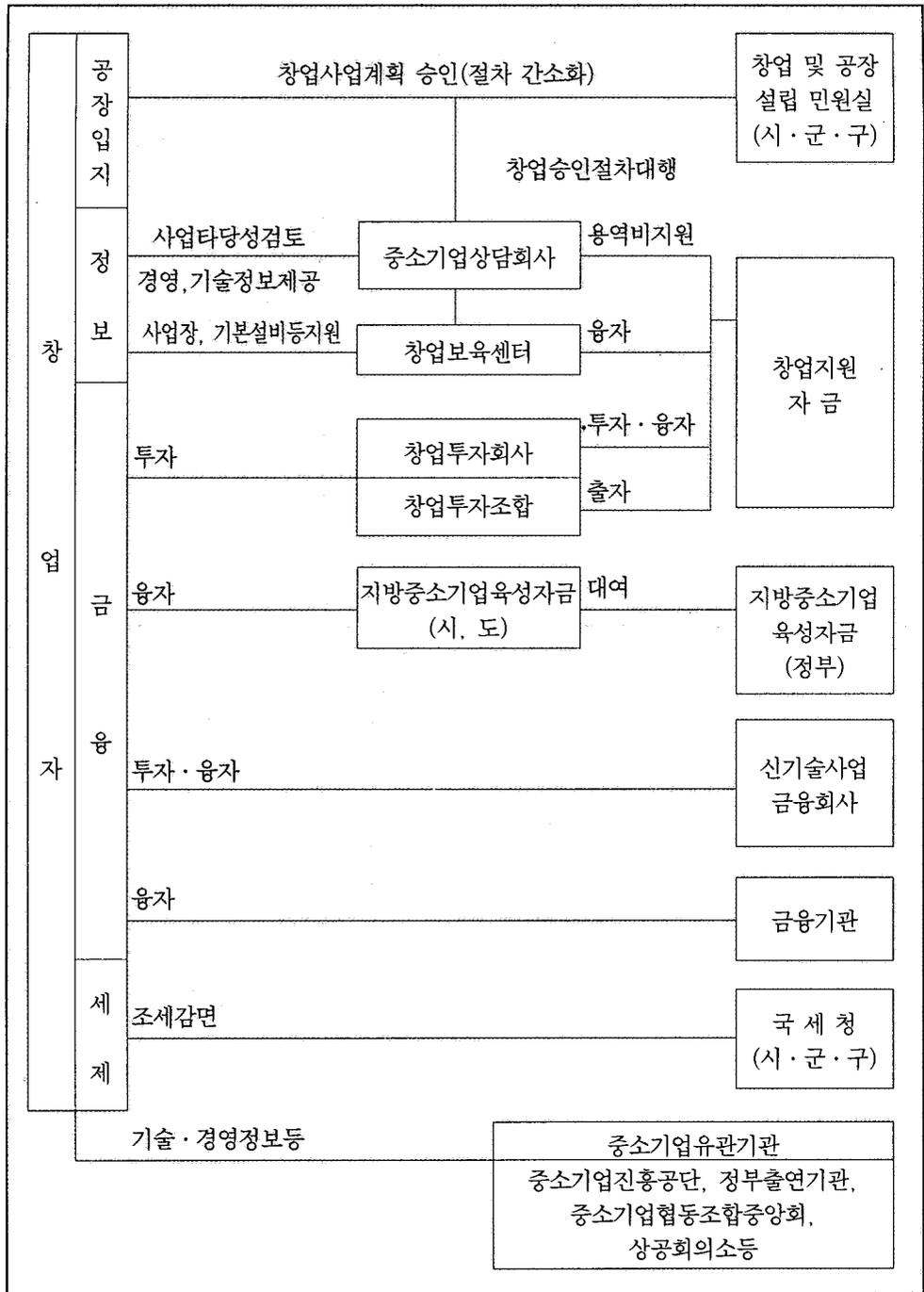
○ 설치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 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 조성 및 운영

- 조성 : 정부 또는 정부의의 자의 출연금, 자금의 운용수익금등

- 운용 : 창투사에 대한 투융자,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융자, 중소기업창업강좌 실시기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그림 2〉 체계도



○ 관리운용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을 개정(95.11.22)에 의거 창업지원자금의 관리운용자가 통상산업부장관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으로 변경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상업상의 주식회사로서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 및 자금력이 취약한 설립후 14년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를 하는 기관으로 55개사가 중소기업청에 등록되어 있음.

○ 1996년 12월 31일 현재 1,999개 창업기업에 2,582,900백만원이 지원되었음.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지원

-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미약한 창업자에 대하여 무담보 투자지원 하는 제도로서 창업자에 대한 경영권은 지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주로 무담보의 주식 인수 또는 약정투자, 전환사채인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며, 기 투자업체에 대한 단기자금대여, 경영 및 기술지원 등 전문적인 후속지원을 통해 창업자의 조속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이윤 발생시 지분에 따라 배분받게 되나 궁극적으로는 기업공개를 통한 자본수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캐피탈형식의 지원방식임.

○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지원

투자조합에 의한 투자는 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어 불특정다수인 일반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기업에 투자후 일정기간(통상 7년) 경과시 투자수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투자방식으로서 투자대상 및 업종 등 지원절차는 창업투자회사와 동일함.

3)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투융자지원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신제품, 신공정개발 또는 제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나 연구개발성과의 기업화, 제품화사업, 기

술도입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작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투자 및 융자로 지원을 하고 있음.

○ 투자지원

- 신창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자본참여를 하는 투자방식

- 회사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통한 지원방식

○ 융자지원

- 일반융자 : 약정기간동안 소정의 원리금을 분할상환

- 조건부융자 : 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기간 실시료(Royalty)를 수취하며, 사업계획의 실패시는 원금상환이 면제되는 융자

전문적인 후속지원을 통해 창업자의 조속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이윤 발생시 지분에 따라 배분받게 되나

궁극적으로는 기업공개를 통한 자본수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캐피탈형식의 지원방식이다.

로 융자조건은 별도로 정하고 있음.

4)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자금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서 각 시 도는 지방중소기업의 육성발전 및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창업자에 대해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시·도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Matching Fund (50:50)로 자금을 조성하여 대체로 창업 2년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는 년 7%이하, 3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8년 이내의 기간동안 7억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있음.

5)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창업자금은 새로운 기술이나 경영감각을 지닌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국민경제의 활력과 중소기업의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하여 창업과 창업이후의 초기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자금임.

- 지원대상 : 제조업, 광업, 조사 및 정보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된 중소기업

○ 국민은행

- 지원대상 : 광업, 제조업, 공학관련서비스업, 조사 및 정보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규 설립하거나 창업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동남은행, 대동은행

- 지원대상 :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설립후 1년이내인 개인 또는 법인사

업자로서 창업자가 해당업종에 2년이상 종사한 자

나.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1) 세제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확대육성발전과 지역별 균형성장 및 건실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창업한 자에 대해 각종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조세감면 내용

중소기업창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내용은 아래와 같음.

2) 부담금 감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하

<조세감면 내용>

관련조세	관련규정	감 면 내 용
법인세 (소득세)	조감법 제6조 창업지원법 제25조	○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창업자 및 수도권외지역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창업자 - 최초 소득발생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 50%감면 ○ 수도권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외)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내 종료하는 과세연도 : 50%감면 - 그 다음 2년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 : 30%감면
등록세	조감법 제113조	○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등록세 75%감면
취득세	조감법 제114조	○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감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조감법 제115조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50%감면

여 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 개발부담금

- 관련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감면내용 :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100% 면제

○ 농지전용부담금

- 관련규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 2
- 감면내용 : 건설부가 고시하는 기준시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한하여 50%감면

○ 산림전용부담금

- 관련규정 : 산림법 제20조의 3
- 감면내용 : 건설부가 고시하는 기준시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한하여 50%감면

다.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는 중소기업창업시 공장설립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 절차등을 일괄의제처리를 통해 간소화함으로써 창업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근거하여 동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조세감면 대상업종>

- 제조업
- 광업
- 부가통신업
- 연구 및 개발업
- 방송업(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함)
- 엔지니어링사업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 물류산업

이 제도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설립 이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게되면 공장설립과 관련된 30개 법률, 62개에 이르는 인·허가사항이 일괄해서 의제처리됨.

라. 창업보육지원사업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 및 사업성은 있으나 제반 창업여건의 취약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신규창업자를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에 일정기간 입주시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등에 작업장제공, 경영 및 기술지도, 정보제공, 자금지원 등 창업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는 사업임.

